

2017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8년 1월 31일(수) 14:00~16:00

2. 장 소 : 화도관 2층 대회의실

3. 대학평의원회의원(11명) : 11명 중 9명 참석

4. 안건

□ 자문

- 1) 2017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 2) 2018학년도 본예산(안), 2018학년도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학교 부담 건

□ 보고

- 1) 국제기관 교환학생에 대한 내규 개정(안)
- 2) 국제교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개정(안)
- 3) 광운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제정(안)

5. 회의 내용 및 결과

● 자문 안건

1) 2017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 기획처 예산조정팀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다.
- 자문내용 : 원안대로 자문하다.

2) 2018학년도 본예산(안), 2018학년도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학교 부담 건

- 기획처 예산조정팀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다.
- 2017학년도 2차 추경 예산(안)과 달리 2018학년도 본예산(안)에 법인전입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법인전입금은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미리 그 예상 금액을 반영하는 것 보다 2018학년도 추경 예산(안) 수립 시 2017학년도와 마

찬가지로 법인전입금을 반영하기로 법인과 협의하였음을 설명하다.

□ 2017년에는 법인으로 인해 재정지원사업에서 탈락되는 등 대학교 발전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으므로 법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전입금을 부담하여야 함을 언급하다.

□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시 법인책무성 지표가 2점으로 조정이 되었고, 정량 및 정성 각 1점씩 배점이 되어 있음을 설명하다. 법인책무성 지표가 기준보다 완화됨에 따라 정량 및 정성에서 모두 기준에 준하는 점수를 획득할 것임을 설명하다.

정성평가(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의 경우 향후 계획서와 이사회 회의록으로 점수 획득이 가능함을 설명하다.

□ 기존 ACE국고보조금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였으며, ACE사업 중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교비로 진행하고, 사업 중 일부는 축소하여 진행하고 중단할 것은 중단할 것임을 설명하다. ACE로 진행했던 사업의 지속 여부는 ACE사업단과 협의 후 결정한 것임을 설명하다.

□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항목 중에서 전임교원보수수준 항목의 경우, 본교 교수 중 일부가 기준이 되는 보수보다 낮게 받는 분들이 있는데 본예산(안)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액이 반영이 되었는지 질의하다.

본예산(안)에 반영하지는 않았으나 기준이 되는 보수수준 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 인원이 극히 일부여서 역량진단 평가에서 감점되지는 않으며 본 지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임을 설명하다.

□ 예산조정팀장의 인건비 설명 중 계약직원 인건비의 전년 대비 30% 삭감(안)에 대하여 계약직원 인건비를 30% 삭감하면 그만큼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줄어드는 인원 대비 늘어나는 업무량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총무팀과 협의를 하였는지 질의하다.

예산(안)에서 30% 절감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실제 계약직원의 퇴직 충원을 중단 하는 등의 적용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것임을 설명하다. 그리고 그렇게 협의 후에라도 예산 절감이 어려울 경우 2018학년도 추경에서 계약직원 인건비를 다시 반영할 것임을 설명하다.

□ 오래 전부터 조직 통폐합 및 인력 재배치 등이 논의만 되어 왔지 실제 적용하지는 않았음을 언급하며, 예산에서 먼저 계약직원 인건비를 삭감할 것이 아니라 조합 및 인사부서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다.

□ 2018학년도 본예산(안)은 적립금 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지가 크게 반영이 되었고 이를 위해 각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다.

□ 자문내용 : 원안대로 자문하다.

● 보고 안건

1) 국제기관 교환학생에 대한 내규 개정(안)

□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

2) 국제교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개정(안)

□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

3) 광운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제정(안)

□ 기획처 기획평가팀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다.

○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